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權利範圍確認

<大法院 第2部 判決>(1981. 4. 14)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 기 흥

關與法官: 안 병 수 · 김 용 철

1. 審判請求人(上告人): 서 형 도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성창전기주식회사
3. 原審決: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 9. 30字, 1978年 抗告審判 第172號 審決
4. 主文: 原審決을 破棄하여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5. 理由

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審判請求인이 1976. 9. 1에 出願하여 1977. 8. 23에 登錄된 登錄第14277號 實用新案의 考案과 被審判請求인이 製造販賣하고 있는 原審決表示(가)號의 考案은 모두 冷溫藏庫用合成樹脂製冰器의 改造構造에 관한 것으로서 兩者는 그 審決書說示와 같은 문을 달았을 때 外氣를 遮斷措置하는 目的是同一하나 그 技術的構成에 있어서는 위 (가)호의 考案은 그 磁石內捕具와 탄선구를 鏇接하여 반호상의 설편으로連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위 登錄된 實用新案의 構造는 그 審決書說示와 같이 1975. 8. 1字 日本國日刊工業新聞社發行「工業材料」1975年8月號에 의하여 위 登錄된 考案의 出願前에 이미 公知된 事實이 認定된다하고 그렇다면 위 登錄된 考案은 그 出願前에 위와같이 이미 公知된 技術部門에 까지 그 效力이 미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가)號의 考案은 위 登錄된 考案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判斷

하고 있다.

그러나 위 原審決에 의하면 그 審決書說示 日本國刊行物인 「工業材料」가 國내에서 頒布되었다는 것인지 國外에서 頒布되었다는 것인지가 不分明할 뿐 아니라 前者에 속한다는 것이라면 위 刊行物이 本件 原審決說示 登錄 第14277號 實用新案의 出願前에 이미 國내에 頒布되었다는點에 관하여 審理判斷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後者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 刊行物이 舊實用新案法(1980. 12. 31 改正前) 第5條 1項2號 但書, 同法施行令 第2條에 該當한다는點에 관하여 審理判斷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위 原審決은 위와같은 實用新案法에 관한 法理를 誤解하여 審理를 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登錄된 實用新案의 考案은 그 出願前에 이미 위 刊行物에 의하여 公知된 것이라하여 그 實用新案權으로서의 權利를 認定할 수 없다는趣旨로 判斷한 것이므로 이 點에 관한 論旨는 理由이 原判決은 그 破棄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原審決을 破棄하고 다시 審理判斷케 하기 위하여 事件을 原

審인 特許廳抗告審判所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一參考

抗告審判

1978年抗告審判(당)第172號

抗告審判請求人: 서형도

被抗告審判請求人: 성창전기주식회사

위當事者間의 1977年審判第342號(登錄第14277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의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原審決을 破棄한다.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審決

1977年審判第342號

審判請求人: 서형도

被審判請求人: 성창전기주식회사
위當事者間의 登錄第14277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確認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審判請求는 이를 却下한다.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